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가단3922 판결 [이득상환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7. 8. 30.

판결 선고 2017.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2. 20.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7. 3. 6.자 보정서의 기산일이 2004. 2. 20.이나 확정판결 및 보정경위에 비추어 2005. 2. 20.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 20.

1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203146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5.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05.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3.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2005. 5. 5.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13.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며, 가압류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면책 항변

피고는 2008년경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0. 4. 8. 면책결정을 받아 2010. 4. 23. 확정되었으므로,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여금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관계, 대여일로부터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권은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조병대